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서상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옥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
박영한, 서호연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이민석,
이병운, 이봉준, 이새날,
이성배, 이숙자, 이종태,
이희원, 최민규, 허 · 훈,
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규정된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,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 관리를 위한 남산생태여가계정 신설(안 제5조)
- 나.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재원 조성 및 용도 규정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)
- 다. 남산생태여가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함(안 제8조제1항)
- 라.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 필요시 분과위원회 설치(안 제9조제3항)

마.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20명 이내로 확대(안 제10조 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, 지방재정법, 지방자치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계정구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1. 도시재생일반계정
2. 남산생태여가계정

제6조의 제목“(기금의 용도)”를“(도시재생일반계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8호 중 “도시재생기금”을 “도시재생일반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도시재생일반계정”으로 한다.

①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시·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%
2.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정부의 보조금

4. 차입금

5.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(단체)의 기부금품

6.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남산생태여가계정) ①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(이하 “남산공원 기본조례”라 한다)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곤돌라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

2.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「남산공원 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사업의 시행

2. 「남산공원 기본조례」 제9조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

3.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

4.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
5.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

제8조(종전의 제7조)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균형발전정책과”를 “각 계정별”로 한다.

2. 분임기금운용관

가. 도시재생일반계정 - 균형발전정책과장

나. 남산생태여가계정 - 도시정비과장

제9조(종전의 제8조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11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시·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% 2.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. 정부의 보조금 4. 차입금 5.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(단체)의 기부금품 6.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	제5조(계정구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 1. 도시재생일반계정 2. 남산생태여가계정
제6조(기금의 용도) <신설>	제6조(도시재생일반계정) ①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시·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% 2.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. 정부의 보조금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도시재생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
9. ~ 12. (생략)

<신설>

4. 차입금

5.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(단체)의 기부금품

6.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② 도시재생일반계정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도시재생일반계정-----

9. ~ 1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남산생태여가계정) ①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(이하 “남산공원 기본조례”라 한다)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곤돌라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

2.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분임기금운용관 : 균형발전정

1. 「남산공원 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사업의 시행
2. 「남산공원 기본조례」 제9조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
3.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
4.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5.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

제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분임기금운용관

책과장

3. 기금출납원 : 균형발전정책과
기금담당사무관

② · ③ (생략)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· ② (생략)

<신설>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0조 ~ 제12조 (생략)

가. 도시재생일반계정 - 균형발전정책과장

나. 남산생태여가계정 - 도시정비과장

3. ----- 각 계정별 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
----- 20명 -----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 ~ 제13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종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11명”을 “20명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

나. 전제

-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제10조(종전의 제9조)의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(상·하반기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- 증원되는 9명은 모두 비공무원으로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≍ 20,700천원(연평균 4,14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	4,140	4,140	4,140	4,140	4,140	20,700
	소계(a)	4,140	4,140	4,140	4,140	4,140	20,7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4,140	4,140	4,140	4,140	4,140	20,70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중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11명”을 “20명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비용(합계) ≍ 20,700천원(연평균 4,14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	4,140	4,140	4,140	4,140	4,140	20,700
	소계(a)	4,140	4,140	4,140	4,140	4,140	20,7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4,140	4,140	4,140	4,140	4,140	20,700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= 20,700천원
= 참석수당+업무추진경비
= 18,000천원+2,700천원

- 참석수당 = 18,000천원
= 수당단가×지급인원×연2회×5년
= 200천원×9명×2회×5년

※ 참석수당 단가 : 「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
- 업무추진경비 = 2,700천원
= 경비단가×지급인원×연2회×5년
= 30천원×9명×2회×5년

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